

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2021. 08. 27.



대한체조협회
KOREA GYMNASTICS ASSOCIATION

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제1조(근거 및 명칭) 본 규정은 대한체조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7장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, 그 명칭은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체조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지도자 양성 등을 도모하며 체조발전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협회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국가대표(우수선수)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2. 국가대표(우수선수)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3.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국가대표 및 우수선수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종목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1. 남자 기계체조
2. 여자 기계체조
3. 리듬체조

②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 원 장 1인
2. 부위원장 약간 1명
3. 위원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③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, 지도자 1명, 등록 팀 관계자 1명, 시·도 협회 임원 1명, 비경기인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(단, 종목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 구성은 이사회 승인 후 달리 할 수 있다).

④ 위원회는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과학지원 팀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세부 팀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요건)

-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- ② 회장과 친족인 사람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협회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. 다만, 선수의 부상,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

- ② 부위원장,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9조(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,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·위원이거나,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- 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- 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임기 종료시 또는 추가 위촉(연임)이 없는 경우

③ 당연직 위원이 해당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④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

제11조(경비) 위원회 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수,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관련한 특별 업무수행이나 회의 참석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 소집)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13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4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5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(2021. 08. 27.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